대표적인 부정근로 사례

※ 분단위 근로시간 입력 가능하나,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최종 근로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1 허위근로

① 13:35~17:00 근로하였으나 출근부상 근로시작시간을 13:00로 입력한 경우

→ 근로시작시간을 13:35으로 입력하고, 근로시간은 13:35~17:00로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분 단위로 입력 가능합니다.

※30분 단위가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② 일시적인 휴강(시험기간 전후 강의일정 변동 등) 시간에 근로한 경우

→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해당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근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기관(근로지) 관리자(담당자)와 담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입력한 경우

→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내역을 출근부에 작성하는 행위는 허위근로이며,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해당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기·수시점검을 통해 위와 같은 사례를 적발 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친구 등 제 3자가 대신 근로한 경우

→ 재단 및 대학의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불가능하여 타인이 대신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근부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3 대체근로

① 본인이 출근부를 잘못 작성하거나, 근로기관·대학 담당자에게 출근부 대신 입력을 부탁하거나 오입력된 경우

→ 본인의 실수 또는 타인이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근부 내역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부정근로 방지 안내

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로 인한 장학금 수급은 위법입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장학금 지급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부적격자 및 기타 불법행위를 통한 장학금 지급 건에 대하여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이자,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최대 5배) + 가산금(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 · 근로기관 및 대학담당자는 본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근로 후 즉시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운영을 위하여 군복무기록·출입국기록 등을 활용하여 부정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예시
»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 10시간 근로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고가의 제품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예시
»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친구 등 제 3자가 근로를 대신하여 진행한 경우 등

3 대체근로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근로 시간이 상이한 경우

예시
» 10:00~11:00(1시간) 근로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 본인 및 기관/대학담당자의 실수로 오입력된 경우도 포함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사항

※ 부정근로로 확인될 경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전체 참여제한

근로장학생

1 허위근로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2 대리근로 :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3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5조와 관련하여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관

부정근로 관련 기관(교내근로지 포함) 제재 기준

유형	1차	2차
허위근로	서면 경고	확정일로부터 2년 사업 참여 제한
대리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사업 참여 제한
대체근로		

※부정근로 조장 등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제한 가능

근로기관 자격해제 발생사유

» 장학생 배정 후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는 기관
» 사업 취지에 반하여 재단이 금지한 업무를 근로하게 한 기관
» 장학생의 출근부 검토·승인 등 장학생 근태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 장학생의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 장학생 간 이해관계 회피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특정 성별, 군 경력 및 기 근로경험을 우대하여 장학생 선발·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 장학생이 업무 중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장학생을 대상으로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장학생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 형사 사건 연루, 성희롱,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단 현장점검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기타 해당 기관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참여대학

→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
→ 부정근로 조장 등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최대 2년 제한 가능
→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부정근로를 인지하였음에도 미처리할 경우 소속대학 예산 삭감

근로중지 자진신고제도

근로장학생이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근로를 일시 중단할 경우, 근로중지 자진신고 실시

① 근로장학생은 신고 전 반드시 근로기관(근로지) 및 대학 담당자에게 근로중지 안내
② 신고방법: 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중지 사전신고

※근로중지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 첨부 필요 (병적증명서, 항공권 등), 미첨부시 추후 부정근로 추정대상자로 지정되어 별도 소명 필요

※근로중지로 신고한 기간동안 출근부 입력 불가

부정근로 사례 신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전자민원